

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일

노 원 구

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주민자치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총회·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목적·기능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정비
(안 제1조, 제5조 및 제13조)

나. 주민자치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, 운영원칙과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위원 정수·자격·선정기준 보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및 제25조)

다. 적용기간이 지난 위원 임기 특례 삭제(안 제10조의2)

라.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대우를 정비하고 자치회장 후보자의 운영계획 발표 근거 마련(안 제11조, 제12조 및 제15조)

마. 감사 결과 제출기한 단축, 특별위원회·임원회의·민관협력회의의 운영 근거 마련(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

바. 주민총회 개최 및 결정사항, 자치계획의 수립·제출 및 지원 절차 정비(안 제20조 및 제21조)

사. 온라인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(안 제35조 및 제36조)

아.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,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(안 제37조, 제38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(단체 또는 개인)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[참조: 자치행정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(전화: 02-2116-3137, FAX: 02-2116-4609, E-mail: 2009022897@nowon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